

특허청 사무분장규칙 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특허청 사무분장규칙

◇ 제 · 개정 이유

가.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개정(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2호, '20. 7. 14. 공포·시행)에 따라 신설되는 벤처형 조직 관련사항 반영

나. 과 업무·변경·신설 및 기타 미비사항 수정

◇ 주요내용

가. 벤처형 조직 사무 신설(제6조의4)

- 벤처형 조직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의 사무 신설

나. 업무신설·변경(안 제9조, 제12조)

- “직원아파트 관리 운영” 삭제 및 “공익요원 관리“를 ”사회복무요원 관리“로 변경

-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“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”, “『지식재산과 혁신』 발간 및 배포” 업무 신설

다. 기타 미비사항(안 제60조, 제67조, 별표1)

- “전자부품심사팀”을 “전자부품심사과”으로, “의료기술심사팀”을 “의료기술심사과”로 변경
- 특허심사부서별 담당 특허분류표 현행화